

4.1.3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정 2016. 04.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보안시스템 개인정보관리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영상정보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따라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본 대학교의 규정에 의거하여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총괄책임자)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를 둔다.

-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사무처장이 된다.
- ③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 ④ 제3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경비관련 업체에 위탁할 경우 경비관리업체의 지휘·감독 업무를 포함한다.

제7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영상정보 수집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은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총괄책임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와 제7호까지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접근권한 부여자) ①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총괄책임자, 담당부서의 담당자, 위탁 경비업체의 담당자로 한다.

제11조(보호조치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라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라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 ⑤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은 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따라 접근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사항(목적, 범위,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⑥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중 “경비업체 담당자”가 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이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본 대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담당부서의 담당자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별표 1의 의거하여 신청·요청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교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삭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의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보유 및 삭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는 30일 동안 보유하며, 이 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 보유기간을 연장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

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①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종합상황실) 장소는 관계자 외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영상정보 관리대장) 제14조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